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3.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를 “제11조의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정직-견책	파면-정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행위의 정도 또는 고의 여부는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3. 부당수령 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본다. 4. 부당수령 비위와 [별표 1] 징계기준 제1호가목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 ----- ----- ----- ----- ----- ----- ----- <u>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담 수령 징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5</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